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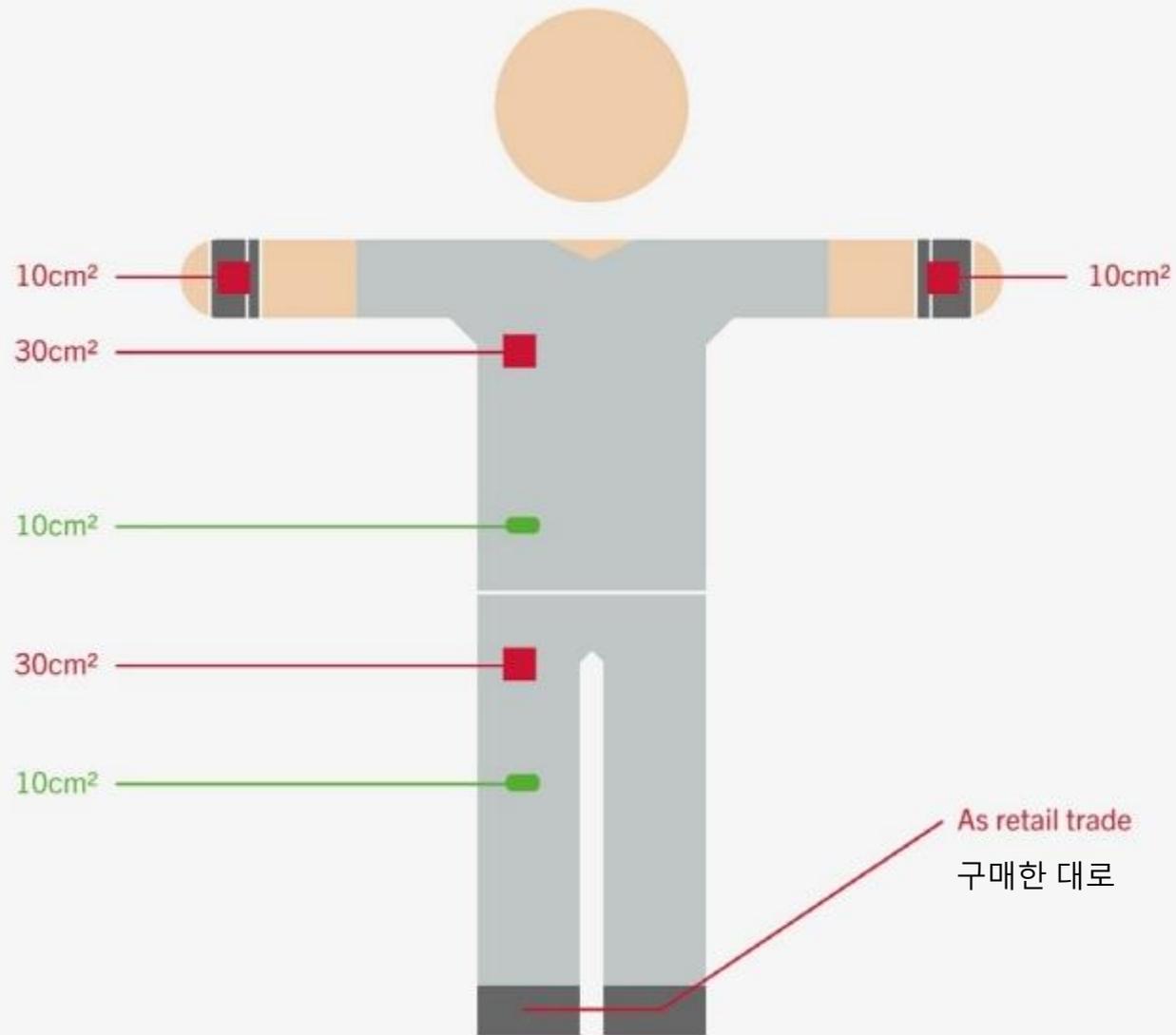
18.18 세계 장애인 역도

도쿄 2020 패럴림픽
제조사 식별 지침

종목별 목록

- 세계장애인역도

앞면



도쿄 2020 패럴림픽
제조사 식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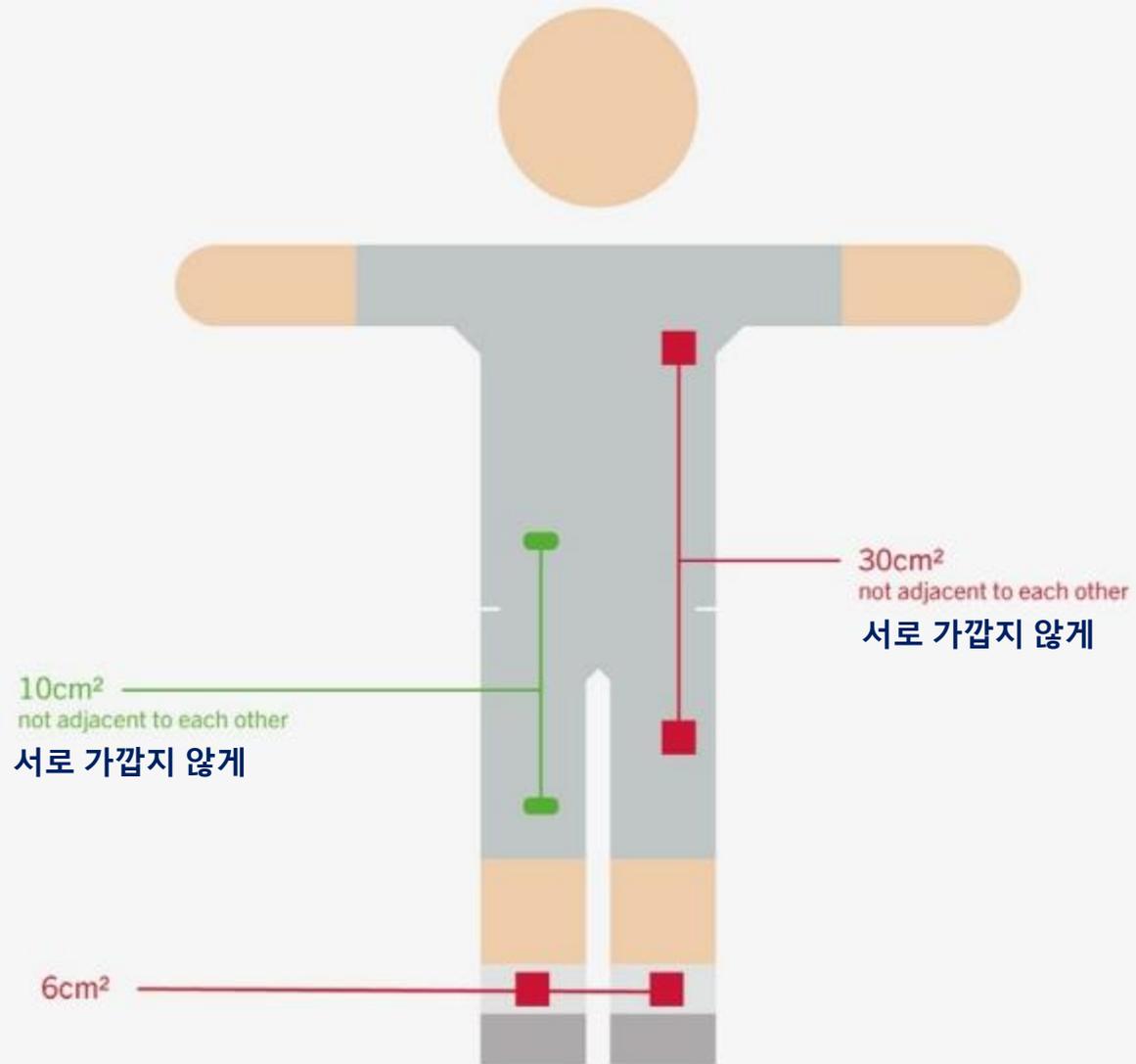
종목별 목록

- 세계장애인역도



각 식별의 유형은 다음 코딩에 표시된 대로 모양 및 색상으로 표시된다.
그림에 표시된 정확한 위치에 식별 정보를 배치해야 하거나 지침에 배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된다.

역도복/일체형



도쿄 2020 패럴림픽
제조사 식별 지침

종목별 목록

- 세계장애인역도



각 식별의 유형은 다음 코딩에 표시된 대로 모양 및 색상으로 표시된다. 그림에 표시된 정확한 위치에 식별 정보를 배치해야 하거나 지침에 배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정된다.



제조사 식별 지침

의류

티셔츠
트레이닝복/자켓

의류 품목 당 제조 업체 로고가 최대 30cm² 사이즈로 허용된다.

하나의 추가 제품 기술 식별이 의류 품목당 최대 10cm² 사이즈로 허용된다.

역도복/일체형

일체형 역도복이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최대 크기에 따라 허리 위 및 허리 아래에 제조사 식별 정보와 하나의 제품 기술 식별이 허용되나, 이러한 식별 정보는 서로 가까워서는 안된다.

장신구

벨트 및
벤치 스트랩

제조사 식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붕대 및 아대

품목 당 하나의 제조사 식별이 최대 10cm² 사이즈로 허용된다.

양말

품목 당 하나의 제조사 식별이 최대 6cm² 사이즈로 허용된다.

수건 (대회 밖)
헤드기어 (대회 밖)

품목 당 하나의 제조사 식별이 최대 10cm² 사이즈로 허용된다.

두건

제조사 식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안경(대회 밖)

렌즈에 허용되는 제조사 식별은 없으며, 대회 6개월 또는 그 이전 이상 소매업을 통해 판매된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사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도쿄 2020 패럴림픽
제조사 식별 지침

종목별 목록

- 세계장애인역도

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사이즈, 빈도 또는 위치 관련).



가방	품목 당 하나의 제조사 식별이 최대 60cm ² 사이즈로 허용되지만, 품목 표면의 1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된다.
----	---

신발

신발	모든 신발류 품목은 대회 6개월 또는 그 이전 이상 소매업을 통해 판매된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사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

이동 장비

휠체어 보철기구	대회 6개월 또는 그 이전 이상 소매업을 통해 판매된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조사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

IF 특정 기술 요구 사항

일반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 IF 기술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7절. 제3자 식별(선수 이름)

일반 지침 7절에 따라 참가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 또는 별명을 포함한 제 3자 식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9절. 국가 또는 패럴림픽 정체성의 극대화

일반 지침 9절에 따라 국가 식별과 관련한 IF 특정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11절. 인증 마크

IF의 인증 마크가 요구되지 않는다.

17절. 제출 절차

세계 장애인역도 기술 사양 및 장비 점검 규칙(현 세계 장애인역도 규칙 및 규정 12.3 및 12.4)이 적용된다.

도쿄 2020 패럴림픽
제조사 식별 지침

종목별 목록

- 세계장애인역도

위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사이즈, 빈도 또는 위치 관련).